인권경영세칙

제 정 2019. 12. 12 개 정(1) 2020. 9. 29 개 정(2) 2024. 1. 18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투자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임직원과 이해관계 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,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인권"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·비준한 국제인 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를 말한다.
- 2. "인권경영"이란 공사의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업무 수행의 우선가치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임직원"이란 공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.
- 4. "이해관계자" 란 공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로서 공사의 출자자,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, 공사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 공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정부 기관, 법인 및 개인을 말한다.

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

제4조(임용상의 차별금지) 공사는 인종, 종교, 장애, 성별, 학력, 나이, 신체적 조건, 출신지역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직원의 채용, 승진, 전보 등 임용과 관련하여 일체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.

- 제5조(직원인권 보호) 공사는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 인격권, 건강권, 휴식권 등 우호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6조(여성권리 및 모성보호) 공사는 채용, 승진 등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고, 여성 직원의 모성보호와 일·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) 공사는 직원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,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할 권리를 보장한다.
- **제8조(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)** ①공사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하다.
 - ②공사는 연소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이들에게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별도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. 단, 어떠한 경우에도 만 15세 이하의 아동을 직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된다.
- 제9조(산업안전 보장) 공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며, 업무상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.
- 제10조(환경권 보장) 공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환경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다.
- 제11조(이해관계자 등의 인권보호) ①공사는 업무 수행 시 이해관계자 등의 보건 및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 - ②공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- ③공사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한다.
 - ④공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.
 - ⑤공사는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사의 인권경영 정책을 알리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장 인권경영 체계

- 제12조(인권경영 선언) ①공사는 모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선언문을 마련하고, 임직원은 인권경영선언문을 인권 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.
 - ②공사는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을 공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등에게 표명한다.
- 제13조(인권경영계획 수립) ①공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 - 1.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
 - 2.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
 - 3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시,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- 제14조(인권경영 주관부서) 공사는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주관부서를 지정한다.
- 제15조(인권경영담당관) 인권경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인권경영담당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- 1. 인권경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 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
 - 4.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5. 인권침해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제16조(인권교육) ①공사는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.
 - ②공사는 인권경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4장 인권경영위원회

- 제17조(설치 및 기능) ①공사는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인권경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2. 인권경영 관련 중요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
 - 3. 인권영향평가 및 제도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
 - 4.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
 - 5. 인권경영 관련 내규의 제정 ·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- 제18조(구성 및 임기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내·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내부위원은 <u>인사담당부서장</u>, 준법감시인,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1인으로 한다.
 -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원 장이 위촉한다. 다만, 공사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 외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.
 - 1. 대학교수, 변호사, 노무사 등 인권 관련 분야 전문가
 - 2. 인권 관련 분야 시민단체 활동 경험이 있는 자
 - 3.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
 - ④위원장은 준법감시인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⑥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⑦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- ⑧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.
- 제19조(소집 및 회의)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-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③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.
- ④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·보관하여야 한다.
- ⑤외부위원에 대해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20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,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제21조(이해충돌 회피)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22조(비밀누설 금지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(위원의 해촉) 공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.
 - 1.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
 - 3. 인권침해행위에 직·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경우
 - 4.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
 - 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5.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6.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5장 인권영향평가

- 제24조(인권영향평가의 실시) ①공사는 기관의 운영,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 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위원회는 공사가 도입하려는 규정, 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

-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③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, 관련 자료 등을 각 부서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④공사는 투명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 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⑤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.
- ⑥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25조(제도개선의 권고)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의 방지조치 또는 관련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제6장 인권침해 구제

- 제26조(인권침해 여부의 상담) 임직원은 인권침해행위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다.
- 제27조(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) ①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 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방문 신고할 수 있다.
 - ②방문 신고 외에도 전화, 전자메일, 공사 제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.
 - ③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 경영담당관에게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.
 - ④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보완하여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기한 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1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.
 - ⑤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신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

- 2.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 한 경우
- 3. 신고된 사건의 원인이 된 행위에 관하여 재판,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
- 4.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
- 5. 처리 중이거나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
- 6.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- ⑥접수 후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.
- 1.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·성폭력 사건은 인사담당부서로 이송
- 2. 불공정·갑질 관련 사건은 감사담당부서로 이송
- ⑦사건을 이송 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사건을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인권경 영담당관에게 통지한다.
- 제28조(조사의 처리원칙)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의 접수, 조치 및 구제 업무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신고인, 피신고인,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여 야 한다.
-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사건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신고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조사의 방법)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,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②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후 의견진술 및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③인권경영담당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,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, 감사원, 수사기 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,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기관으 로 송부할 수 있다.
 - 제30조(위원회 심의 및 의결) ①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.
- ③위원회는 상정된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할 수 있다.
- 1.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
- 2.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3.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④제3항과 관련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등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원회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.
- ⑤ 위원회는 피신고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제31조(통보 및 조치) ①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의 인권침해행위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행위 심의·결정서를 위원회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(단, 제30조 제4항의 위원은 제외한다)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.
 - ②위원회는 인권침해에 따른 구제조치,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,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을 사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 - ③위원회는 제1항에서 결정된 인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제32조(시정 및 징계) ①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1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, 효과, 절차 등은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3조(신고인의 보호) ①인권경영 주관부서 및 위원회의 위원 등은 신고인, 피해자,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공사는 신고인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다만, 신고 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사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보장 및 불이익 처분 금지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

있다.

제7장 보칙

제34조(기타)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공사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(제정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9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0년 9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)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24년 1월 18일 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접수날짜: 년 월	일	접수번호 :	
인권침해행위 신고서			
1. 신고인			
① 이름 ② 소속			
③ 연락처(휴대전화 또는 이메일)			
2-1. 피해자 (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)			
① 이름	② 소속		
③ 연락처(휴대전화 또는 이메일)			
④ 신고인과의 관계			
2-2.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, 피해자는 신고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?			
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()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()			
③ 모르고 있다()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()			
3.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당사자(피신고인)는 누구입니까?			
① 이름	② 소속	② 소속	
③ 연락처(또는 식별가능한 정보)			
4.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행위를 당하였습니까?			
① 시기	② 장소	② 장소	
③ 내용(첨부파일로 작성 가능)			

^{*}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행위를 보거나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되는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